



인도 투자:

한국 기업을 위한 법률 및 비즈니스 전략



한국어 버전은
QR코드를 스캔해
확인하십시오

본 자료는 컨퍼런스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법률 자문이나 법률 의견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수령인은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전문가 자문을 구하지 않고 본 자료에 근거하여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본 자료에서 다루는 주제에 대해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귀사의 Trilegal 담당 파트너에게 문의하시거나 alerts@trilegal.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투자제도	6
2	인도 내 자본 운용: 투자펀드	13
3	Make in India: 스마트 구조화 전략	16
4	에너지 및 인프라: 성장 동력	20
5	인도 시장 진입: 경쟁법 필수 사항	24
6	인도 노동시장: 새로운 규정	28
7	인도 내 분쟁 대응: 주요 동향	31
8	용어집	34

서문



Mr. Ramesh Iyer
회장
주한인도상공회의소

인도와 한국 간 경제 관계가 새로운 전략적 모멘텀을 얻고 있는 시점에, 주한인도상공회의소(ICCK)와 Trilegal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2026년 4월 19일~21일)은 양국 파트너십에 중요한 추진력을 더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8년 만에 이루어진 한국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은 정부 차원의 MOU 15건을 체결했으며, 주요 기업 간 MOU 20건의 체결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 전략 비전 2026~2030」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간 MOU는 다음과 같은 핵심 고성장 분야를 포괄합니다.

- 기후 및 환경
- 과학기술
- 항만 및 해양유산
- 산업 협력
- 철강 공급망 관련 기술 및 무역
- 중소기업
- 문화·창조 산업
- 스포츠

기업 차원에서는 조선, 철강, 전자, 자동차 분야에서 주요 거래가 성사되었으며, 여기에는 HD한국조선해양과 인도의 NSHIPTN 및 Sagarmala Finance 간 초기 합의도 포함됩니다. 또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POSCO, HD현대의 CEO를 포함한 약 250명의 한국 경제계 인사와 350명의 인도 경제계 인사가 양국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또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고도화를 위한 협상을 다음 달 공식 개시하고, 이를 2027년 상반기까지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양국 교역 규모를 500억 달러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양국 산업 담당 장관 간 새로운 대화 메커니즘인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가 올해 출범할 예정이며, 첫 회의는 2026년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한 인도 국방장관은 한국전쟁 당시 인도의 참전을 기리는 전쟁기념시설의 공동 제막식을 위해 2026년 5월 대한민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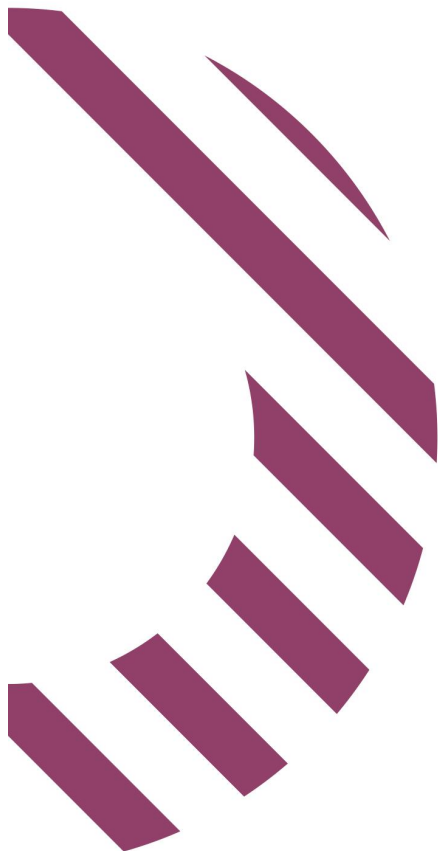
이처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인도는 한국 기업에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로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견조한 경제성장 궤도, 정책적 안정성, 그리고 “Make in India”와 “Digital India”와 같은 대표 정책 이니셔티브는 장기 투자를 위한 탄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동시에 양국 간 협력이 보다 고도화되고 산업 분야별로 다양해짐에 따라,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해서는 인도의 법률 및 규제 환경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번과 같은 세미나는 이러한 지식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무적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대화를 촉진하며, 국경을 넘는 기회를 모색하는 기업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미나 개최를 위해 소중한 파트너십을 제공해 주신 Trilegal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문성과 관점을 공유해 주신 귀빈 연사 여러분과 참여 로펌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율촌의 기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논의가 기업들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을 촉진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역사적인 방문을 계기로 형성된 전략적 약속에 발맞춰 한-인도 경제 협력축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ICCCK는 앞으로도 회원사와 이해관계자들이 성장하는 양국 파트너십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세미나가 유익하고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1

투자 제도

개요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투자 관계 중 하나인 한-인도 투자 회랑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 자본은 다양한 산업 분야와 투자 구조를 통해 인도에 투입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관계와 인도의 외국인투자 규제 체계가 모두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6년 4월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 즉 2026년 4월 정상회의에서는 여러 구체적인 양자 성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양국은 2024~2025년 기준 약250억~270억 달러 수준인 양국 교역 규모를 2030년까지 500억 달러로 두 배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산업협력위원회 설립, 인공지능(AI), 반도체 및 디지털인프라 분야의 한-인도 디지털 브리지 구축, 그리고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정 협상 재개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본 장에서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한-인도 간 국경 간 투자축을 뒷받침하는 법적 체계, 규제 요건, 진출 구조 및 산업별 고려사항을 살펴봅니다.

투자 경로

인도로의 국경 간 투자는 「1999년 외국환관리법」(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1999, FEMA)에 따라 수립된 자본통제 체계의 규제를 받으며, 주로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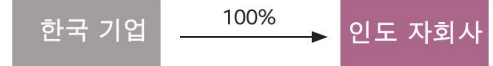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는 장기적인 전략적 지분 보유를 위한 기본적인 투자 경로입니다. 「2019년 외국환관리비채무상품 규칙」(FEM (Non-Debt Instruments) Rules, 2019, NDI Rules)에 따라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는 사전 정부 승인 없이 자동승인 경로를 통해 납입자본금의 최대 100%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위, 은행, 방송, 멀티브랜드 소매 및 전자상거래 등 규제 산업에는 산업별 투자 한도와 조건이 적용됩니다. 주식의 발행 또는 양도는 공정가치 평가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공인 딜러를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외국인 포트폴리오투자(Foreign Portfolio Investment, FPI) 경로는 적격 외국 기관투자자가 상장주식 및 일정 한도 내의 사모 신용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경로입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투자자 그룹별로 납입자본금의 10%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 경로는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 SEBI)에 FPI로 등록한 국부펀드, 규제대상 연금, 보험회사 등 적격 외국 기관투자자에게 제한됩니다.

외국벤처캐피탈투자(Foreign Venture Capital Investment, FVCI)는 SEBI에 등록된 적격 투자자가 지정된 성장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또 다른 경로입니다. FVCI는 일반적인 FDI 경로에 비해 가격 산정 및 투자 구조 설계 측면에서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공정시장 가치 기준 가격 산정 지침 및 양도 제한의 면제, 선택적 전환증권의 활용 등이 포함됩니다.

진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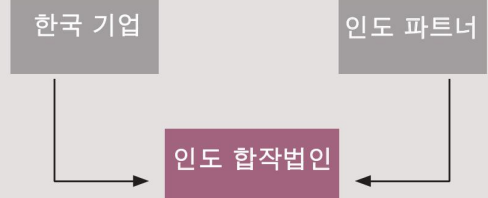
인도 내 투자에 적합한 최적의 구조는 지배권, 기술 보호, 산업별 규제, 프로젝트의 복잡성, 자본 효율성 및 투자 회수 기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완전자회사



- 100% 지분 보유와 지배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는 자동승인 경로를 통해 100% FDI가 허용됩니다.
- 운영상 유연성이 높습니다. 중합집중식의 사결정, 자본 배분, 글로벌 공급망과의 연계가 가능합니다.
- 그룹 내에서 지식재산권(IP) 및 기술을 통제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 모회사와 인도 자회사 간의 회사 서비스 계약이 있는 경우, 이전가격 및 정상가격 원칙 관련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 현지 법인 설립이 필요하며, 인도 내 경영진과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히 제조업 및 산업재 분야에 적합한 구조로, 인도 시장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합작투자



- 현지 파트너가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규제 산업에서 유용하며, 토지 취득, 규제승인 확보, 유통망 구축 및 자금 조달을 위해 인도 파트너의 핵심적인 지원과 관계망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적합합니다.
- 주주간계약 또는 합작투자계약에서 거버넌스, 즉 이사회 구성과 유보사항, 의사결정 및 교착상태 해결 방식, IP 및 기술 라이선스와 보호 구조, 지분양도 제한, 투자 회수 및 채무불이행관련 조항을 명확히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파트너 간 이해관계 정렬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합작투자의 성공 여부는 각 파트너의 역할, 의사결정 방식, 향후 자금 조달 및 투자 회수 일정에 대한 양측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소수지분 투자

한국 투자자 +
기타 공동투자자

인도 발기인
/창업주

인도
피투자회사

- 창업주가 주도하는 기업에 대해 지배권을 수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 지분율은 일반적으로 10~26% 수준으로 제한되지만, 투자자는 이사회 참여권, 유보사항, 정보권 등 거버넌스 권리와 보호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권리가 '지배'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배로 판단될 경우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방 보호와 상승 이익 참여, 희석방지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전환주식과 같은 구조화 증권을 활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창업주와의 이해관계 정렬을 확보하고, 상장, 전략적 매각 또는 채무불이행 시 풋옵션권 등을 통한 투자 회수 경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구조

한국 대주

외부상업차입
(ECB)

인도 차주

- 완화된 제도: ECB 경로를 통한 해외 대주로부터의 차입 제도가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2026년 개정에 따라 차입 한도가 상향되고, 대주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가격 책정, 총비용 및 조기상환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 인도 기업들은 인프라 금융, 설비투자, 운전자본 및 일반 기업 목적을 위해 ECB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ECB를 인도 내 인수금융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동승인 경로에 따라 주식 질권, 자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및 보증 제공 방식으로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대주는 주주에 비해 도산 절차상 배당 순위가 높기 때문에 자본 보호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 이 구조는 대규모 인프라, 부동산 및 산업 프로젝트에서 흔히 활용됩니다. 한국 투자자는 지분 익스포저와 운영 단계의 지배권을 보유하는 대신, 채무 자본과 대주 보호권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펀드 구조

한국 LP / 앵커 투자자

인도 역내
AIF

GIFT IFSC
펀드

인도 포트폴리오 회사

- 구조: 한국 기관투자자는 SEBI에 등록된 대체투자펀드(Alternative Investment Fund, AIF)에 유한책임사원 또는 수익증권 보유자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F는 법정 세무상 패스스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구자라트 국제금융기술도시(Gujarat International Finance Tec-City, GIFT) 내 펀드로서 국제금융서비스센터청(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s Authority)에 등록된 펀드에 투자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펀드매니저가 인도 내 포트폴리오 회사에 대한 투자를 운용합니다.
- 위험 배분: 투자자의 익스포저는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발생하며, 프로젝트별 리스크는 펀드매니저가 모니터링합니다.
- 이 구조는 인도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와 분산 익스포저 확보에 적합하며, 특히 기관투자자에게 유용합니다. 최근에는 한국 투자자로부터 앵커 자본을 유치하여 인도 게임 및 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펀드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 협력/ 프랜차이즈 및 브랜드 라이선스

한국 브랜드 / 공급
업체 / 라이선서

인도 프랜차이즈 /
라이선시

— 라이선스 / 프랜차이즈 /
유통 / 공급 —

인도 시장

- 구조: 브랜드 또는 기술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유통, 전자상거래 및 물류 파트너십을 활용하는 구조로, 인도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 이 구조는 소비재 및 소매 분야, 예를 들어 뷰티와 의류 분야에서 흔히 활용됩니다. 인도 전자상거래, 디지털 및 유통 플랫폼을 활용하고, 옴니채널 및 결제 파트너와 협력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한국 소비재 브랜드, 스튜디오 및 게임 회사들이 지분투자에 앞서 또는 지분투자를 대신하여 프랜차이즈 계약, 마스터 라이선스 구조 또는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인도 시장에 진입할 때도 사용됩니다.
- FEMA: 로열티 및 일시금 지급은 자동승인 경로에 따라 허용됩니다.
- 브랜드, IP 및 공급에 대한 통제: 프랜차이즈, 공급 및 라이선스 구조를 활용하면 한국 브랜드 보유자는 인도 내 자체 법인이나 유통망을 설립하지 않고도 계약상 보호장치를 통해 브랜드 기준, 가격, IP 및 기술 사용에 대한 통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 제도

FEMA에 따른 인도의 해외투자 체계는 2022년 해외투자 제도 개편을 통해 전면적으로 정비되었으며, 외환통제상 감독은 유지하면서도 해외투자에 대해 보다 상업적 현실에 부합하고 완화된 접근방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해외직접투자와 해외포트폴리오투자를 구분하며, 글로벌 인수, 다층적 지주회사 구조, 이연대가, 주식교환 및 해외 운영 자회사와 관련된 현대적 거래 구조를 명시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여러 기존 사전승인 요건을 합리화하고, 재무적 약정 및 보증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라운드트리핑과 단계적 자회사에 대한 처리 방식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정해진 재무 한도, 보고 요건 및 진정한 사업 목적 요건을 전제로, 국경 간 M&A와 해외 확장을 추진하는 인도 기업에 더 큰 구조 설계상의 유연성을 도입했습니다.

IPO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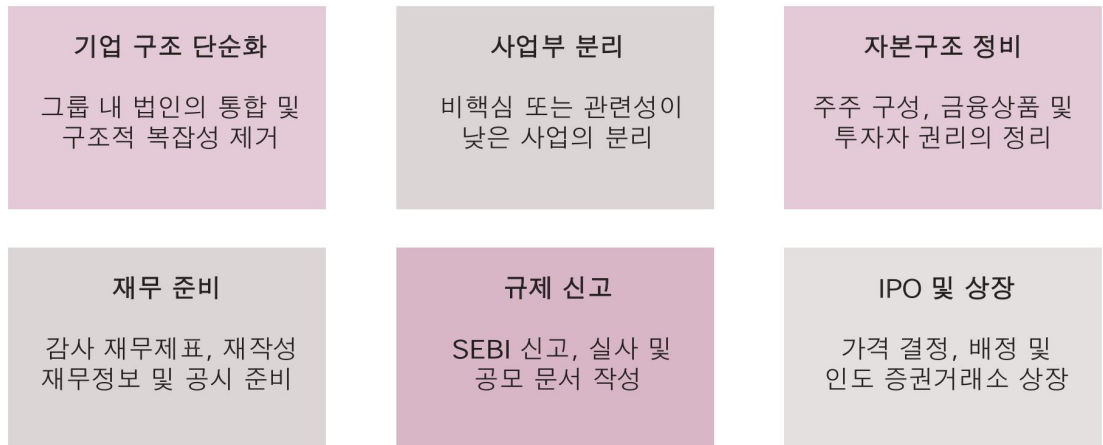
최근 인도 자본시장은 유동성과 장기 자본을 모두 확보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신뢰할 수 있고 점점 더 매력적인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기관투자자의 강력한 참여, 개인투자자의 관심 확대,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은 것입니다.

인도 자본시장에서는 최근 현대자동차 인도 법인의 2024년 상장과 2025년 10월 LG전자 인도법인의 상장 등 한국 기업의 대형 인도 자회사 상장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두 상장 모두 매우 성공적으로 평가되었으며, 한국 기업의 인도 자회사가 기업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경로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규제 변화는 기존에 해외에 소재지를 두었던 발행회사에 적용될 수 있는 리버스 플립 완화 조치를 제공합니다. SEBI도 최근 대형 발행회사에 대한 최소 공모 및 지분 보유 기준을 간소화하기 위해 상장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IPO 준비는 법무, 재무, 거버넌스 및 공시 측면에서 초기 단계부터 정렬이 필요한 구조적이고 다단계적인 절차입니다.

IPO 준비: 구조화된 다단계 절차



IPO 이후 회사는 보다 엄격한 공시, 거버넌스 및 감사 요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한국 모회사와 상장된 인도 자회사 간의 지속적인 상업적 약정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로열티, 경영지원 수수료 또는 관계사 간 공급 거래는 상장 규정상 특수관계자 거래 승인 요건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의결권을 25%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지배권을 취득하는 경우,

SEBI 인수규정에 따라 공개주주로부터 대상 회사 총 주식의 최소 26%를 취득하기 위한 의무 공개매수 제도가 적용됩니다.

SEBI 상장폐지 규정에 따라 인수자는 고정가격 방식 또는 역경매 방식의 가격발견 절차를 통해 소수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고 대상 회사를 비상장화할 수 있습니다.

국경 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최근 규제 및 정책 개혁

주요 산업 분야

- 제조업: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생산연계 인센티브 제도(Production Linked Incentive, PLI)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첨단화학전지 배터리, 전자제품, 통신장비, 백색가전 및 특수강 등 다양한 분야의 투자와 제조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드라프라데시, 우타르프라데시, 마하라슈트라와 같은 주정부들은 전자, 반도체, 전기 모빌리티 및 통합 제조 클러스터를 위한 산업별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플러그 앤 플레이 인프라, 물류 연결성 및 단일 창구 승인 체계를 제공합니다.
2026년 4월 정상회의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이 투자 협력축을 한층 제도화했습니다.
(a) 자동차, 조선, 화학, 반도체, 통신장비,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전략 자원, 핵심 광물, 그린수소 및 그 파생물,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 등의 분야에서 무역과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 설립
(b) HD한국조선해양과 해양개발기금 간 타밀나두주 그린필드 조선소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그리고 POSCO와 JSW간 오디샤주 일관제철소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방산 및 항공:
방위산업 분야의 FDI는 신규 산업허가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 자동승인 경로를 통해 최대 74%까지 허용됩니다. 이는 기존 49%에서 상향된 것입니다. 74%를 초과하여 최대 100%까지의 FDI는 현대적이고 최첨단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입증되는 경우 정부승인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항공기 정비 · 수리 · 분해점검(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MRO) 분야에서도 자동승인경로를 통한 100% FDI가 허용됩니다.

이 분야는 ‘자립 인도’ 정책 기조에 힘입어 구조적 전환을 겪고 있으며, 국내 제조, 수출 및 글로벌 파트너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T Defence의 K9 Vajra-T 협력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공동생산 모델은 한국 방위산업 투자를 위한 또 하나의 참고 모델을 제시합니다.

2026년 4월 정상회의에서 방위산업은 협력 확대를 위한 우선 분야로 명시되었습니다. 한-인도 방산 액셀러레이터(Korea - India Defence Accelerator, KIND-X)는 양국의 방산기업, 스타트업 및 연구 생태계를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방위산업 제조는 여전히 허가 대상 활동이지만, 부품에 대한 기준 명확화와 허가 유효기간의 최대 15년 연장 등을 포함해 허가 제도가 합리화되면서 장기 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개선되었습니다.

- 우주:
우주 분야에서는 자동승인 경로를 통한 100% FDI가 허용되어, 외국 기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졌습니다. 이는 위성 제조, 발사체 조립 및 지상 시스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 게임,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온라인 게임에 대한 규제 환경은 「2025년 온라인 게임 진흥 및 규제법」을 통해 최근 명확해졌습니다. 이 법은 온라인 ‘현금성 게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등록 요건을 전제로 실력 기반 게임, e스포츠 및 온라인 소셜 게임을 허용했습니다. 게임 및 OTT 플랫폼 분야에서는 산업별 규제 준수를 전제로 최대 100% FDI가 허용되지만, 디지털 뉴스와 같은 인접 분야에는 여전히 투자 한도가 적용됩니다.
2026년 4월 정상회의에서는 문화 · 창조 산업(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으며, 공동제작, 교육 · 훈련 교류, 애니메이션 및 시각효과 등 분야의 기술 공유를 포함해 영화 분야협력을 촉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한국 스튜디오와 인도 미디어 플랫폼 간 K-콘텐츠 공동제작 및 IP 라이선싱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K-AI 및 글로벌 역량센터:

2026년 4월 정상회의에서는 AI, 반도체 및 정보기술 분야의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한 장기 협력 프레임워크인 한-인도 디지털브릿지가 출범했습니다. 이는 2026년에 발표된 인도의 반도체 미션 2.0, 한국의 K-칩스법 및 K-반도체 벨트 전략과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며, 산업용 AI 응용, 반도체 공급망, 디지털 공공 인프라 및 국경간 핀테크 분야에서의 협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또한 글로벌 역량센터(Global Capability Centre, GCC)의 빠른 성장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엔지니어링 R&D, IT 서비스, 공유서비스 및 AI ·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위해 벵갈루루, 하이데라바드 및 수도권 지역에 GCC를 점차 확대해 설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카르나타카, 안드라프라데시 및 마하라슈트라 등의 주정부 GCC 정책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며, 해당 정책은 자본 보조금, 급여 환급, 인지세 면제 및 기타 혜택을 제공합니다.

- 금융서비스 및 보험:
2026년 4월 정상회의에서는 인도 통합 결제인터페이스(Unified Payments Interface, UPI)와 한국의 국경 간 결제 허브를 연계하여 빠르고 안전한 국경 간 거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NPCI International Payments Limited와 금융결제원 간 양해각서(MoU)도 체결되었습니다. 인도 디지털 결제 인프라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인도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 RBI)의 결제 애그리게이터 인허가 체계가 적용됩니다. 또한 한국 핀테크 기업은 비은행금융회사(Non-Banking Financial Company, NBFC)로서 활동별 등록을 RBI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인도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GIFT 국제금융서비스 센터(GIFT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 GIFT IFSC)는 역외 은행업, 펀드 운용, 보험 및 자금관리 업무를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는 세제 인센티브, 달러 표시 결제 및 통합 규제 체계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한국 금융기관과 투자자에게 이는 은행, 자산운용, 보험 및 구조화 금융 전반에 걸친 기회를 창출합니다. 인도 보험회사에 대한 FDI 한도는 납입 자본금의 74%에서 100%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이사와 핵심 경영진의 과반수가 인도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으나, 현재는 인도 거주자인 최고경영자 또는 대표이사 1인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한국 보험그룹은 인도 보험규제개발청(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 of India, IRDAI) 등록 및 보험료 재투자 등 준수 조건을 전제로, 인도에서 완전자회사 형태의 보험 및 재보험 사업 기회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2026년 Press Note 2 — 인도와 국경을 접한 국가로부터의 투자

2020년 Press Note 3는 인도와 국경을 접한 국가의 개인 및 법인, 또는 그 실질적 소유자가 그러한 국가 출신인 개인 및 법인의 모든 투자에 대해 사전 정부 승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소유”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하여 불확실성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해석이 일관되지 않거나 승인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2026년 Press Note 2는 이러한 제한의 해석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명확성을 제공했습니다.

- 실질적 소유:
“실질적 소유”의 기준은 「자금세탁방지법」상 기준과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즉 회사, 파트너십 및 신탁의 경우 10% 기준이 적용됩니다.
- 개인 기준:
개인이 인도와 국경을 접한 국가 출신으로 취급되는지 여부는 거주지가 아니라 국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소수지분 투자:
지배권을 수반하지 않는 10% 이하의 지분 투자는 자동승인 경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지배 기준:
지분을 기준과 관계없이, 거버넌스 권리 또는 기타 형태의 영향력을 통해 지배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정부 승인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신속 승인:
지정된 5개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는 60일의 승인 기한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한국 투자자에게 직접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층적 투자 구조, 공동투자자 또는 글로벌 펀드가 참여하는 거래에서 인도와 국경을 접한 국가의 투자자가 상당한 실질적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보호 — DPDP법 및 규칙

「2023년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법」(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23, DPDP Act)과 「2025년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규칙」(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 Rules, 2025, Rules)은 인도 최초의 포괄적 개인정보 보호 체계로, 18개월의 전환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DPDP법 및 규칙은 민감성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디지털 개인정보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동의 기반 체계를 규정합니다. 또한 데이터 수탁자(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특정 데이터 수탁자를 ‘중요 데이터 수탁자’로 지정하여 추가 의무를 부과합니다. 아울러 정보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여기서 정보주체는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이 제도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허용하되, 정부가 특정 지역으로의 데이터 이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최대 25억 루피, 한화 약 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DPDP법 조항을 규제·집행하기 위해 데이터보호위원회를 설치합니다. 해당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통신분쟁해결·항소심판소(Telecom Disputes Settlement and Appellate Tribunal)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동의 관리자와 관련된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12개월, 즉 2026년 11월까지의 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별도로, 기업들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와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보안 보호조치를 이행하는 등 DPDP법의 실제적 조항을 18개월 이내, 즉 2027년 5월까지 준수해야 합니다.

인센티브 — PLI, STPI 및 제조업 투자 벨트

PLI 체계는 한국 투자자와 특히 관련성이 높은 제조업 분야에서 5~6년에 걸친 매출 증가분에 연계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대상 분야에는 자동차 및 부품, 첨단화학전지 배터리, 전자부품, 백색가전 및 특수강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실행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약 요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a) 지급 시점: 인센티브는 감사를 거친 검증이 완료된 후에만 지급됩니다.

(b) 국내 부가가치 요건: 국내 부가가치 요건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을 보유한 신청자에게 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c) 지배권 변경 관련 불확실성: 지분 이전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PLI 승인에 대해 관련 산업별 당국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PLI 외에도, 소프트웨어기술단지 제도 (Software Technology Parks Scheme, STPI)는 수출지향형 체계를 통해 IT 및 R&D 조직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조업 투자의 경우, 우타르프라데시, 타밀나두, 마하라슈트라 등 주정부 주도의 산업단지와 전용 회랑이 선호 입지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입지는 준비된 인프라, 토지 배정, 간소화된 승인 절차 및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문화 교류 협력축

2026년 4월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2026~2030년 문화교류 프로그램도 수립되었습니다. 최근의 이니셔티브는 인도 내 한국 산업 클러스터와 주거 타운십을 통해 해외 주재원 생태계를 지원하는 것과 함께, 문화 교류, 교육 파트너십 및 관광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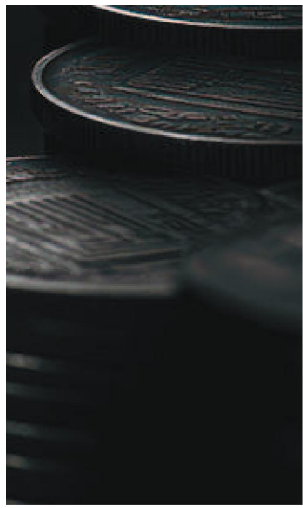
2

인도 내 자본 운용: 투자펀드

지난 10년간 인도의 자본시장과 투자펀드 생태계는 크게 심화·발전해 왔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일회성 직접투자에만 의존하기보다 펀드 구조를 통해 인도 내 투자 기회에 접근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과 함께 규제 체계도 꾸준히 성숙해졌습니다.

오늘날 대체투자펀드(Alternative Investment Fund, AIF) 제도는 더 이상 단순한 펀드 설립 체계에 그치지 않습니다. 보다 발전된 거버넌스 및 투자자 보호 체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GIFT City는 국제 지향형 펀드 구조를 위한 보완적 플랫폼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도 익스포저를 확보하고자 하는 한국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아래의 네 가지 실무적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역외 펀드를 통한 인도 투자

첫 번째 선택지는 한국 투자자가 역외 펀드 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독립적인 역외 인도 특화 펀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조건이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인도 펀드 기구와 병행하여 투자하는 병행펀드일 수도 있습니다.

역외 기구가 인도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기본적인 인도 진입 경로는 일반적으로 FDI, FPI 또는 FVCI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합니다. FDI 경로는 일반적으로 인도 비상장회사에 직접 투자하는 데 사용되며, 규제기관이 정한 투자상품 제한, 가격 산정 기준 및 산업별 투자 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FPI는 상장시장 익스포저, 공개시장 채권 및 기타 포트폴리오 투자에 더 적합합니다. FVCI는 보다 제한적인 경로로, 일반적으로 벤처·스타트업형 익스포저와 특정 지정 산업 또는 상품에 대한 투자와 관련됩니다.

구조 설계 측면에서 이 경로는 투자자 기반이 주로 역외에 있고, 운용사가 자금 풀링 기구를 인도 밖에 유지하면서도 적절한 인바운드 투자 경로를 통해 인도 포트폴리오 투자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에 가장 적합합니다.

인도 내 설립 펀드 기구를 통한 인도 투자

지난 10년간 인도의 투자펀드 시장은 상대적으로 분산된 영역에서 보다 제도화되고 규제된 생태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는 상당 부분 AIF 규정의 도입과 지속적인 발전에 의해 견인되었습니다. 인도 중심 익스포저를 확보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는, 전략의 핵심이 인도에 있는 경우 SEBI 등록 AIF에 직접 출자하는 방식이 가장 명확한 경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 AIF는 신탁, 유한책임파트너십(LLP) 또는 회사 형태로 설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 상 인도 펀드의 90% 이상은 신탁 형태로 설립되며, 일반적으로 네 개의 핵심 당사자로 구성됩니다.

첫째, 설정자는 신탁을 설정하는 주체로, 보통 투자운용사 그룹 내 법인이지만 신탁을 설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도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수탁자는 대개 독립적인 제3자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셋째, 운용사는 보수를 받고 투자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며, 인도에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넷째, 스폰서는 규제상 최소 출자금, 즉 이른바 “skin in the game”을 제공하는 주체로, 역외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신탁 형태로 설립된 AIF는 동일한 우산형 기구 아래 여러 개의 투자 scheme을 둘 수 있으며, 사모 방식으로 국내 및 외국 투자자 모두로부터 출자 약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류 사모자본 전략에서는 Category II AIF가 일반적으로 가장 실무적인 유형입니다.

Category II AIF는 Category III에 수반되는 레버리지 구조 없이 지분·지분연계 및 채권 전략을 모두 수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Category I AIF는 일반적으로 벤처캐피털, 인프라, 사회적 임팩트 및 사회적·경제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평가되는 기타 분야에 초점을 둡니다.

인도 AIF 제도는 사모펀드에 익숙한 일련의 규율을 수반합니다. 여기에는 최소 펀드 규모 2억 루피, 투자자 1인당 최소 출자 약정액 1,000만 루피, scheme당 투자자 수 1,000명 한도, 최소 존속기간 3년 등이 포함됩니다. 운용사는 투자 및 회수 결정을 위해 투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정해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구성원 최소 1인을 포함하여 적절한 자격을 갖춘 투자팀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경로는 펀드가 명확히 인도 규제권 내에 위치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가 보다 표준화되고 예측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기관투자자에게 점점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가치 펀드 제도 도입, 투자자 적격인정을 위한 출자 약정 기준 완화, AIF 구조 내 공식 공동투자 프레임워크 마련 등으로 인해 외국 투자자에게 인도 펀드 모델의 매력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마스터-피더 구조를 활용한 인도 투자

일부 역외 투자자는 내부 정책, 세무, 거버넌스 또는 구조 설계상의 이유로 인도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마스터-피더 구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핵심 투자기구가 인도 AIF가 되고, 외국 투자자는 해당 AIF에 직접 참여하거나 역외 피더펀드를 통해 참여합니다.

이는 그 자체로 별도의 법정 투자 경로는 아니며, 국내 자본은 직접 수령하고 외국 자본은 직접 또는 역외 풀링 기구를 통해 수령할 수 있는 인도 펀드를 중심으로 설계되는 구조 모델입니다. 인도 AIF는 국내 및 해외 투자자 모두로부터 출자 약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로를 활용하면 운용사는 단일한 인도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서도 역외 투자자에게는 보다 익숙한 비인도 펀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역외 피더펀드는 기타 외국 LP를 위해 청약, 거버넌스, 비밀유지 및 양도 측면에서 맞춤형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인도 AIF는 주된 투자 기구로 유지됩니다.

최근에는 GIFT City 피더펀드와 인도 AIF 마스터펀드를 결합한 마스터-피더 모델도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 중심의 마스터펀드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역외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GIFT City 설립 펀드를 통한 인도 투자

마지막 경로는 인도 최초의 국제금융서비스센터(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 IFSC)인 GIFT City를 통한 투자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경로는 국제금융서비스센터청(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s Authority, IFSCA)이 전용 펀드 운용 제도를 발전시키고 점차 고도화함에 따라 신뢰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GIFT City는 인도 정부가 국제 금융 허브로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인도 본토보다 국제 지향적이고 기업 친화적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GIFT City는 단일 통합 규제기관, 외화 기반 생태계, 그리고 역외 자본에 대해 보다 완화된 감독 방식과 글로벌 투자자에게 익숙한 형태로 설계된 펀드 체계의 이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FM 규정에 따르면, 펀드 운용사는 펀드운용기관(Fund Management Entity, FME)으로 설립되어 IFSCA에 등록해야 하며, 해당 펀드는 사모투자설명서(Private Placement Memorandum, PPM)를 IFSCA에 제출함으로써 출시됩니다. FME는 GIFT City 내에 회사, 유한책임파트너십(LLP) 또는 지점 형태로 설립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GIFT City 펀드는 등록 FME, 즉 비소매 FME(Registered FME (Non-Retail))에 의해 제한형 scheme, 즉 비소매형 scheme으로 출시됩니다. FME는 정해진 경력 요건과 실질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GIFT City에 두어야 합니다.

구조 설계 측면에서 GIFT City 경로는 인도 포트폴리오 회사에 투자하기 위한 역외 자본 조달에 활용될 수 있으며, 관련 제도에 따라 인도 거주자 자본을 모아 해외투자에 활용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GIFT City 펀드의 주요 규율은 역외 투자자에게 대체로 익숙한 형태입니다. 최소 펀드 규모는 300만 달러, 투자자 1인당 최소 투자금액은 15만 달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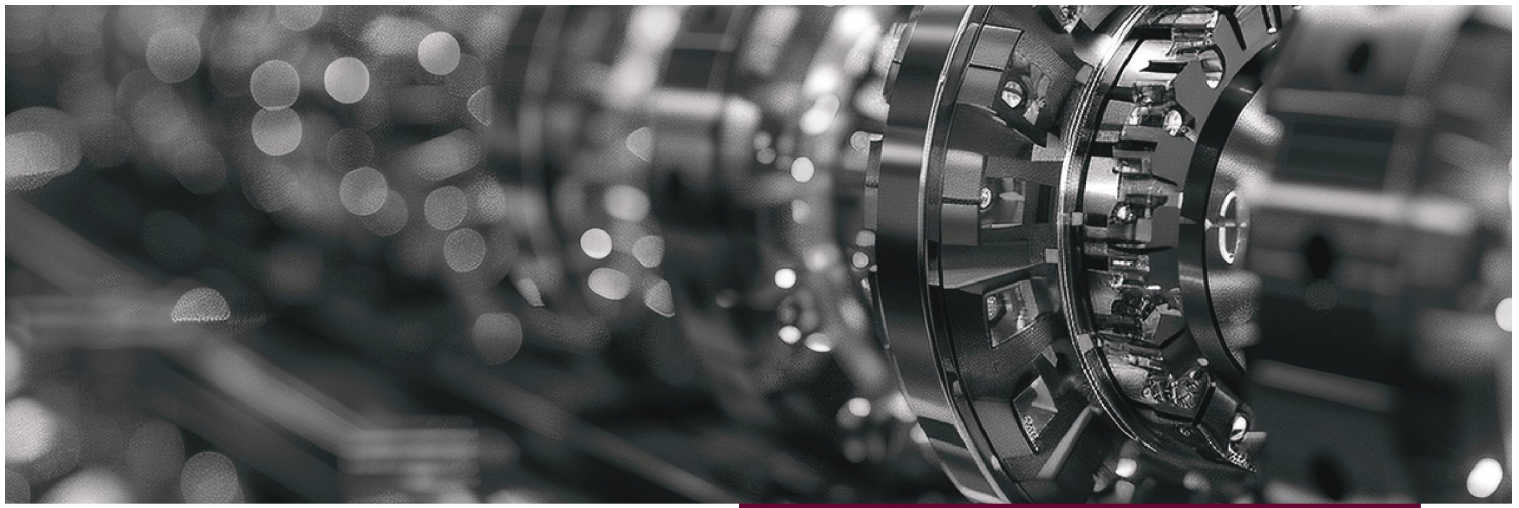
다만 임직원 및 이사에 대해서는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적격투자자에 대해서는 유연성이 인정됩니다. 투자자 수는 1,000명 미만으로 제한되며, SPV를 통한 공동투자 또는 분리 포트폴리오나 별도 종류 수익증권을 통한 공동 투자가 가능한 등 상당한 구조 설계의 유연성이 제공됩니다.

역외 투자자에게 GIFT City의 가장 큰 매력은 인도와 연계된 플랫폼이면서도 여러 역외형 장점을 함께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보다 빠른 시장 출시, 인도 본토 AIF보다 유연한 차입 및 레버리지 활용, FME 출자 약정 면제 가능성,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더 큰 분산 투자유연성이 포함됩니다. 또한 GIFT City는 직접세 및 간접세 인센티브 패키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도 생태계 내에 있으면서도 역외 관할지와 유사한 운용환경을 원하는 글로벌 플레이어와 외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점차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맺음말

시장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쟁점은 더 이상 인도가 본격적인 사모펀드 생태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인도는 이미 이를 충분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질문은 투자자 기반과 투자 전략에 가장 적합한 규제 및 구조 경로가 무엇인지입니다.

인도의 AIF 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빠르게 성장해 왔고, SEBI는 보다 견고한 거버넌스 체계를 계속 구축해 왔으며, GIFT City는 단순한 정책 구상을 넘어 실질적인 추가 플랫폼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는 외국 투자자에게 보다 성숙하고 신뢰할 수 있는 펀드 생태계를 제공하며, 역내, 역외 및 GIFT City 플랫폼 전반에 걸쳐 더 폭넓은 구조 설계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Make in India: 스마트 구조화 전략

개요

인도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한국 기업집단은 이제 우대적 시장 접근, 컴플라이언스의 용이성, 인센티브 수혜 자격이 분쟁 발생 단계가 아니라 구조 설계 단계에서 점점 더 많이 결정되는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본 부속 노트는 한국 투자자들이 인도에 공급망을 구축할 때 접하게 되는 법률 및 세무 구조를 정리합니다. 여기에는 SEZ, EOU, GIFT IFSC, 계약 제조와 전속 제조를 포함한 운영모델 선택지, PLI, RoDTEP, RoSCTL 및 주정부 차원의 패키지와 같은 인센티브 조합, 그리고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실무에서 활용되는 방식을 재편하고 있는 관세 및 FTA 준수 체계가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노트는 CEPA 2.0 협상에 대한 당사의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 협상에서는 원산지 규정, 서비스 시장 접근 및 비관세장벽이 대부분의 상업적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영모델 — SEZ, EOU 및 DTA 구조화	GIFT IFSC — 국경 간 금융 및 지주 플랫폼
의미: 한국 투자자는 제조 거점을 특별경제구역 (Special Economic Zone, SEZ), 수출지향기업 (Export Oriented Unit, EOU) 또는 국내관세 지역 (Domestic Tariff Area, DTA) 법인 중 하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SEZ의 경우 무관세 수입, 자격 요건 충족 시 「1961년 소득세법」 제115BAB조에 따른 신규 법인 대상 15% 우대 법인세율, 순외화수익 의무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DTA 법인은 PLI 및 주정부 패키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모델은 관세, GST 및 환급 측면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수반합니다. 중요성: 이러한 선택지는 상호 대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SEZ는 수출 주도형 사업에 적합하고, DTA + PLI 모델은 수입대체 및 내수시장 중심 사업에 적합하며, EOU는 보다 유연한 중간 경로를 제공합니다. 부적절한 모델을 선택할 경우 프로젝트 기간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매입세액공제 누수와 인센티브 가치의 훼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공 내용: GIFT IFSC는 인도 내에 위치하면서도 단일 통합 규제기관인 IFSCA가 관할하는 금융 관할지입니다. 특정 소득에 대해 10년간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비거주자 대상 서비스에 대해서는 GST가 부과되지 않으며, 금융회사, 펀드 운용, 항공기 및 선박 리스, 글로벌 인하우스 센터, 자금관리 조직을 위한 전용 규제 프레임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관련성: GIFT IFSC는 인도 관련 자금관리 업무, 캡티브 보험, 선박 리스 또는 한국 LP 자본을 인도 인프라로 유입시키기 위한 펀드 기구를 통합하려는 한국 기업집단에 유용합니다. 2026년 4월 체결된 IFSCA와 한국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간 국경 간 금융상품 관련 MoU는 규제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활용 가능성을 더욱 강화합니다.
인센티브 — PLI의 실제 작동 방식	주정부 패키지 — 협상 가능한 추가 혜택
메커니즘: PLI는 성과연계 보조금 제도입니다. 산업별로 차등화된 인센티브 구조를 가지며, 매출연계 보조금부터 생산량 기반 생산 인센티브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됩니다. 인센티브율은 일반적으로 산업에 따라 4~18% 수준이며, 5~6년에 걸쳐 지급됩니다. PLI는 세액공제나 설비투자비 환급이 아닙니다. 이를 잘못 이해하면 프로젝트 경제성 산정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현황: PLI 제도는 14개 산업 분야에 걸쳐 고시되었으며, 2025년 12월 기준 약 836건의 신청이 승인되고 약 2조 1,600억 루피, 미화 약 260억 달러 규모의 실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전자 관련 제도는 2026년 중반부터 단계적으로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후속 제도인 전자부품 제조 제도, 약 4,000억 루피 규모가 이미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12~18개월은 수혜 자격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공 내용: 자본 보조금, 인지세 환급, 전기세 면제, 고용연계 보조금, 앵커 투자자를 위한 맞춤형 패키지 등은 주정부 차원에서 협상됩니다. 타밀나두, 마하라슈트라, 구자라트, 카르나타카, 안드라프라데시, 텔랑가나와 같은 주들은 제조업, 반도체 및 조선 분야에서 한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주정부 차원의 MoU는 대개 초기 단계에서 체결되지만, 인센티브 규모는 투자금액과 고용 규모를 기준으로 한 산정표에 따라 최종 확정됩니다. 한국 투자자들은 부지 선정 전에 인센티브를 협상하지 않고, 부지 선정 후에 협상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산지 규정 — 증명서에서 입증자료로	자진 정정 — 제18A조 안전장치
변경 사항: 인도는 2025년 3월 18일부터 「2020년 CAROTAR 규칙」 전반에서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를	변경 사항: 2025년 재정법에 의해 도입된 「관세법」 제18A조와 「2025년 통관 후 수입신고 자진 정정 규정」이 2025년 11월 1일

“원산지 입증자료” (Proof of Origin)로 대체했습니다. 이제 입증 부담은 서명된 증명서 자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자와 한국 공급업체에게 부과됩니다. 의미: 수입자는 원산지를 감사 대응이 가능한 업무 흐름으로 관리해야 하며, 자재명세서 추적자료, 부가가치 산정자료 및 공급업체 확인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원산지 검증은 현재 국제관세 FTA 셀 국장국을 통해 중앙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CEPA 혜택은 소급적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진행 중인 분쟁과 관련된 핵심 신흥 쟁점으로, 혜택 확보를 위해서는 사전 단계에서의 원산지 관리 체계가 중요합니다.	시행되었습니다. 수입자는 감사, 수색 또는 조사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ICEGATE를 통해 통관 후 수입신고서를 자진 정정하고 차액 관세와 이자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벌칙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중요성: 이는 인도에서 최초로 도입된 공식적인 신뢰 기반 통관 후 정정 경로입니다. 과거의 품목 분류, 과세가격 또는 원산지 오류를 승계한 한국 기업집단에게는, 이를 선제적으로 활용할 경우 소송 리스크를 컴플라이언스 이슈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평가 — 특수관계자 수입 리스크: 한국 모회사와 인도 자회사는 양측의 특수관계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기 위해 특별평가국(Special Valuation Branch, SVB)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로열티, 기술료 및 수입 후 조정금액의 관세가격 반영 문제가 포함됩니다. 이전가격 입장과 관세평가 입장은 점점 더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설계상 유의점: 로열티 구조, 계약 제조의 원가가산 마진, 관계사 간 서비스 수수료는 세무감사 단계에서 사후적으로 조정하기보다, 직접세, GST 및 관세 처리 방식이 일관되도록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2025년 11월, 인도는 SVB 사건을 포함한 잠정 관세평가에 대해 기한 내 종결 요건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간 미결 상태로 남아 있던 관세평가 분쟁이 장기화될 위험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주재원 파견 및 공유서비스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익스포저 현황: 한국인 주재원 파견과 그룹 공유서비스 비용 청구는 지난 10년간 인도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진 국경 간 조세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이 쟁점은 고정사업장, 기술용역료 원천징수, 서비스 수입에 대한 GST 문제에 걸쳐 있습니다. 효과적인 대응: 명확한 고용주 기록상 주체 배분, 공유서비스에 대한 문서화된 편익 테스트, 그리고 사전가격합의와 사전심판을 활용해 사전에 입장을 확정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Korea Plus 및 한-인도 Fast Track 메커니즘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아직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 혜택 — RoDTEP, RoSCTL, AA, EPCG 이용 가능한 제도: 수출제품 관세·세금 환급제도(Remission of Duties and Taxes on Exported Products, RoDTEP)와 주·중앙정부 조세 및 부과금 환급제도(Rebate of State and Central Taxes and Levies, RoSCTL)는 고시된 효율표에 따라 수출연계 환급을 제공합니다. 사전승인(Advance Authorisation, AA) 및 수출촉진자본재(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EPCG) 제도는 수출의무와 연계하여 무관세 수입을 허용합니다.	분쟁 — 비대면 및 사전심판 체계 변경 사항: 인도는 2020년 이후 소득세 비대면 평가 및 불복 절차, 보다 신속한 GST 환급 일정, 소득세·GST·관세 전반에 걸친 사전심판 체계 강화, 그리고 분쟁 추적의 디지털화를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절차적 마찰을 전반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수혜 자격, 요율 정합성 및 수출 의무 추적은 절차적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문제 발생 양상은 대개 법적 쟁점이라기보다 시스템상의 문제입니다. 즉 문서 오류, ICEGATE 표시 오류, 외화입금 실현 자료와의 대사 문제가 대부분의 청구 손실을 초래합니다.

의미: 거래가 시작되기 전에 사전심판을 신청하는 경우, 품목분류, 과세가격, 공급장소 및 소득·거래의 성격 판단에 대해 미래지향적 확실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후적 입장 정리는 여전히 가장 느린 경로입니다.

CEPA 2.0 — 재협상의 실제 쟁점

출발점:

기존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은 2009년 8월 체결되어 2010년 1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인도의 대한민국 양자 무역적자는 2022 회계연도 약 94억 달러에서 2025 회계연도 153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며, 같은 기간 인도의 수출은 81억 달러에서 58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2026년 4월 델리 정상회의에서 양측은 협정 고도화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 협상 축:

(i) 원산지 규정 — 역내 부가가치 기준의 강화,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확대, 검증 권한의 강화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제3국 우회 수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ii) 비관세장벽 및 표준 — 인도는 무역 흐름의 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해 표준의 상호인정, 적합성 평가 및 산업별 승인 절차의 신속화를 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iii) 서비스 시장 접근 — 인도는 IT, 전문서비스 및 전문인력 이동에 대해 한국의 더 높은 수준의 개방 약속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은 전자, 자동차 및 화학 제품에 대한 상품 시장 접근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설계에 대한 시사점:

CEPA 2.0에서 원산지 규정이 강화되고, 기존의 원산지 입증자료 기준이 결합될 경우, CEPA 특혜를 활용하는 한국 기업집단은 초기 단계부터 현지 함량, 조달 및 제조 운영을 더 높은 입증 기준에 맞춰 설계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보세창고, 단계적 통관 및 제18A조에 따른 자진 정정과 같은 수단은 예외가 아니라 표준적인 실무가 될 것입니다. MFN 세율과 CEPA 세율 간 관세 차이는 전자, 자동차 부품 및 화학 분야에서 여전히 상당합니다. 이들은 2025~2026년 예산에서 이미 산업별 관세 조정이 이루어진 분야입니다.

맺음말

한국 기업집단에 대한 인도의 투자 매력은 이제 단순히 인센티브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컴플라이언스 중심 환경에서 그 인센티브를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이제 구조화는 투자 초기 단계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SEZ, EOU, PLI를 결합한 DTA, GIFT IFSC 중 어떤 모델을 선택할지, 그리고 이전가격 및 로열티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지는 투자 이후 세무 및 관세 프로파일의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과거에는 소송으로 해결되던 분쟁이 이제는 설계를 통해 해결되거나, 아예 예방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둘째, FTA 특혜는 더 이상 단순한 관세 품목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 대응 태세의 문제입니다. 원산지증명서에서 원산지 입증자료로의 전환, DIC FTA 셀을 통한 중앙집중식 검증, 그리고 CEPA 2.0에서 예상되는 보다 엄격한 기준은 모두 감사 수준의 원산지 자료와 자재명세서 추적체계 없이 특혜관세를 주장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셋째, 제도적 채널은 열려 있지만 아직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Korea Plus, 투자 승인 관련 한-인도 Fast Track 메커니즘, 사전가격합의, 사전심판, 제18A조 자진 정정 경로, IFSCA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협력 프레임워크는 모두 한국 투자자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장치입니다. 이러한 장치를 초기 단계에서 활용하는 기업집단은 분쟁이 구체화된 뒤에야 문제를 상급 단계로 올리는 기업보다 일관되게 더 나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2030년 양국 교역 500억 달러 목표와 2026년 4월 정상회의에서 마련된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에 맞춰 포지셔닝하려는 한국 기업집단에게 단기적 우선 과제는, CEPA 2.0의 강화된 규정과 PLI 일몰이 운영 환경을 다시 설정하기 전에 제도적 약속을 프로젝트 단위의 구조, 운영모델 선택, 원산지 규정 대응 체계, 그리고 사전심판 및 제18A조의 적절한 활용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주: 미 달러화 금액은 2026년 4월 21일 기준 USD/INR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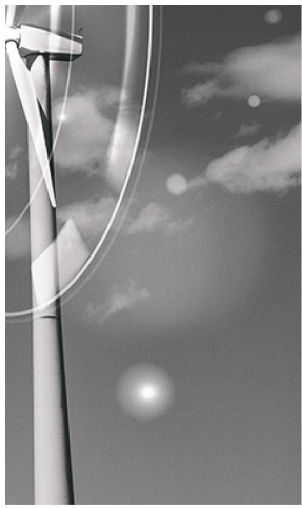


4

에너지 및 인프라: 성장 동력

인도의 에너지 및 인프라 환경은 한 세대에 걸친 대전환을 겪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원자력, 탄소시장, 항만, 철도, 도로, 도시개발, 조선, 배터리, 반도체 및 탄소포집 전반에서 규제 개혁, 자본 동원 및 산업정책이 맞물리며,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환경 중 하나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본 장에서는 2026년 4월 기준 이들 분야의 주요 규제 및 정책 동향을 체계적으로 개관하고, 각 분야가 제공하는 투자 기회의 범위를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으로 특히 강한 모멘텀이 예상되는 한-인도 양자 협력축에 대한 당사의 관점을 제시합니다.



재생에너지 — 표준화된 입찰 규칙 및 현지조달 요건

변경 사항:

인도는 현재 태양광, 풍력, 하이브리드 및 저장장치를 결합한 확정·급전 가능 재생에너지 전반에 대해 표준 입찰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인도 신재생에너지부(Ministry of New and Renewable Energy, MNRE)는 2027~2028 회계연도까지 연간 50GW 규모의 중앙정부 입찰 파이프라인을 확정했습니다. 모듈 및 터빈에 대한 현지조달 요건이 도입되었으며, 셀과 웨이퍼에 대해서도 유사한 요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회의 범위:

인도는 2030년까지 비화석 에너지 설비용량 500GW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전계획은 현재 2032년까지 수립되어 있으며,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자동승인 경로를 통해 계속 100% 허용됩니다.

원자력 — 정부 독점 종료 및 책임 제도의 완화

변경 사항:

「2025년 SHANTI법」은 「1962년 원자력법」과 「2010년 원자력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법」을 대체합니다. 이 법은 발전소의 건설, 소유 및 운영을 포함한 특정 활동에 대해 인도 민간기업 및 합작법인에 허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결합 있는 공급 또는 기준 미달 서비스에 대한 무제한 책임을 폐지합니다.

기회의 범위:

인도는 2047년까지 원자력 설비용량 100GW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형 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 R&D에 21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또한 2033년까지 최소 5기의 인도 자체 개발 SMR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상 PPA — 재생에너지 속성 조달 옵션

변경 사항: 중앙전력규제위원회(Central Electricity Regulatory Commission, CERC)는 가상 전력구매계약(Virtual Power Purchase Agreement, Virtual PPA)을 양도 불가능한 특정 인도 전력시장 계약으로 인정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해당 계약에 대한 규제 관할권 문제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지침은 관련 법령상 재생에너지 소비의무(Renewable Consumption Obligations) 준수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회의 범위:

기업 구매자는 이제 에너지 속성에 대해 금융적으로 정산되는 계약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전에는 제공되지 않았던 선택지입니다.

탄소크레딧 거래제도 — 인도 탄소시장 출범

변경 사항: 인도는 탄소크레딧 거래제도(Carbon Credit Trading Scheme)를 통해 제도 설계 단계에서 시장 출범 단계로 이동했습니다. 에너지효율국(Bureau of Energy Efficiency, BEE)은 준수 및 상쇄 메커니즘에 관한 상세 절차를 발표하고, 상쇄 메커니즘하의 승인 분야를 고시했으며, 계정 등록을 개시하고 공인 탄소검증기관의 등록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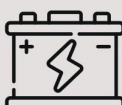
기회의 범위:

이는 산업 전반 및 프로젝트 기반 크레딧을 포괄하는 인도 탄소시장의 초기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승인된 상쇄 분야에는 탄소포집·활용·저장(Carbon Capture, Utilisation and Storage, CCUS)도 포함됩니다.

배터리 — 자본 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

변경 사항:

인도는 약 43GWh 규모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attery Energy Storage Systems, BESS) 지원을 위해 두 건의 사업성 격차 보조금(Viability Gap Funding, VGF) 제도를 승인했습니다. 또한 2028년 6월 30일까지 상업운전을 개시하는 병설형 BESS에 대해 주간 송전요금 100% 면제를 연장했습니다.





기회의 범위:

2029~2030년까지 BESS 수요가 41.65GW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셀, 팩, 시스템 통합업체, 설계·조달·시공(EPC) 서비스, 에너지관리시스템 및 장기 운영·유지보수 전반에서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 정책 구상에서 파일럿 단계로

변경 사항:

인도 정부는 5개의 국가 CCU 테스트베드를 출범시키고, CCUS R&D 로드맵을 공개했으며, CCUS 구축을 위해 21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기회의 범위:

투자자들은 감축이 어려운 산업 분야에서 초기 기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항만 — 규제 체계의 전면 개편

변경 사항:

「2025년 인도 항만법」은 1908년 법률을 대체하여 항만 거버넌스를 위한 현대적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은 법정 조정기구, 디지털화, 요율 투명성, 친환경 기준 및 구조화된 분쟁 해결 절차를 도입합니다.

기회의 범위:

동 법 시행 이후, 바다반 항만과 갈라테아 베이 환적 허브를 포함한 6개 메가 항만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철도 — 화물 회랑 분야의 기회

변경 사항:

2025년에는 두 개의 전용 화물 회랑이 거의 100% 개통되었고, 25개의 복합화물터미널이 가동을 시작했으며, 인도 자체 개발 자동열차보호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기회의 범위:

총 121개 회랑 프로젝트, 총연장 12,133km, 220억 달러 규모가 승인되었으며, 추가로 162개 프로젝트, 총연장 16,910km, 350억 달러 규모가 평가 중입니다.

도시 인프라 — 통합 개발

변경 사항:

2026~2027년 예산은 도시경제권별로 5년간 5억 3,500만 달러를 배정했으며, 이는 개혁 연계형·경쟁공모형 금융 방식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성장 연결축으로 7개 고속철도 회랑이 발표되었습니다.

기회의 범위:

투자자들은 Tier-2 및 Tier-3 클러스터 전반에서 더 강한 통합성을 갖춘 지역 단위의 금융조달 가능한 도시 및 산업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절적인 도시 단위 사업이 아니라 생태계 기반 투자를 가능하게 합니다.

조선 — 자본 보조금을 통한 규모 확대

변경 사항:

2025년 예산은 27억 달러 규모의 해양개발기금을 설립하고, 19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여 조선 금융지원정책을 개편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선박 해체에 대한 크레딧 노트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기회의 범위:

456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총 288건, 21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원칙적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로 및 고속도로 — 민간자본 참여 기회 확대

변경 사항:

인도 도로교통고속도로부는 2007~2008년 이후 처음으로 건설·운영·이전 (Build-Operate-Transfer, BOT) 프로젝트에 대한 표준 실시협약 체계를 개정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연금형 모델 (Hybrid Annuity Model, HAM)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유사한 전면 개편이 예상됩니다.

기회의 범위:

총연장 13,400km, 약 890억 달러 규모의 민관협력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이 개발 대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또한 이러한 자산을 유동화하고 투자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인프라투자신탁 (Infrastructure Investment Trust, InvIT)의 활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본격화

변경 사항:

인도 정부는 약 170억 달러의 투자 약정이 수반되는 10개 반도체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이 중 2개 공장은 상업생산을 시작했으며, 추가 2개 공장은 2026년에 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회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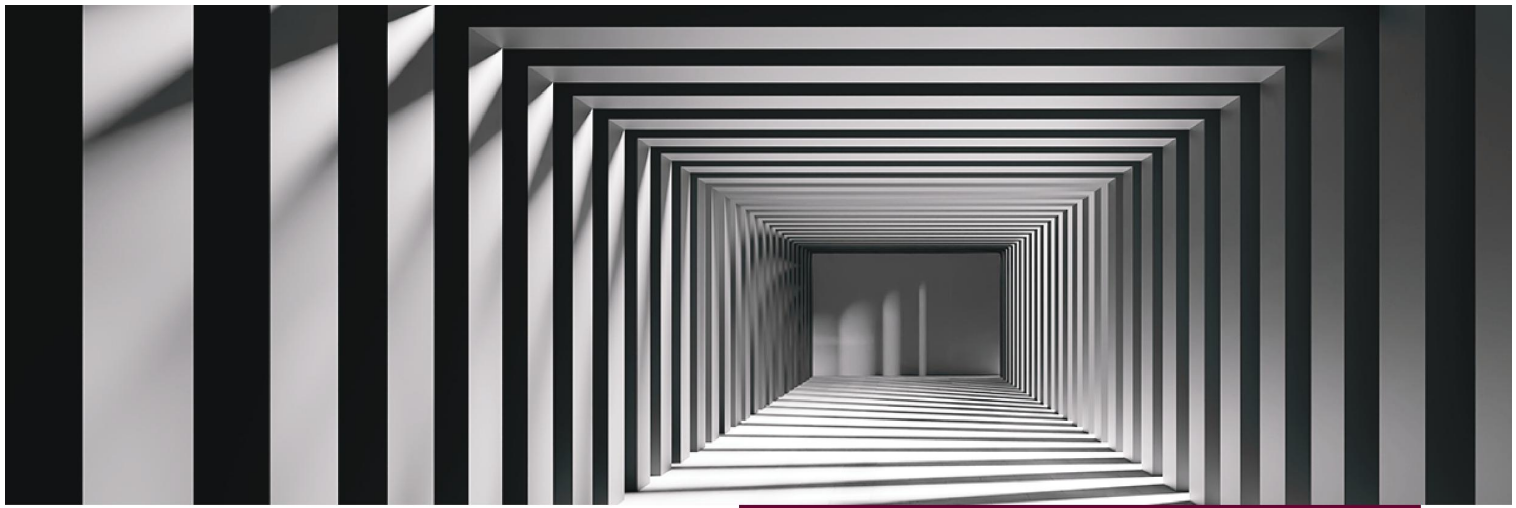
국내 부품 제조에 대한 추가 지원은 전자부품 제조 제도 (Electronics Component Manufacturing Scheme)를 통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약 25억 달러가 배정되었습니다.

맺음말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은 이미 한국 투자자에게 인도 시장 진입을 위한 강력한 양자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특히 시의성이 큼니다. 인도와 한국이 CEPA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의 최근 개혁은 한국 기업집단이 뚜렷한 강점을 보유한 분야, 즉 재생에너지, 배터리, 원자력 공급망, 항만, 조선, 도로, 철도, 반도체 및 산업 도시 인프라 전반에서 투자 가능한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 투자자에게 CEPA는 단순한 무역협정을 넘어서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CEPA는 한국의 기술, 제조 및 프로젝트 개발 역량과 에너지 전환, 물류 및 산업 인프라에 대한 인도의 장기 수요를 연결하는 상업적 가교가 될 수 있습니다. 한-인도 협력축의 다음 단계는 정책 모멘텀, 산업별 역량, 그리고 새롭게 정비되는 양자 협력 프레임워크 간의 이러한 적합성에 의해 견인되어야 합니다.

주: 미 달러화 금액은 2026년 4월 21일 기준 USD/INR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것임.



5

인도 시장 진입: 경쟁법 필수 사항

인도의 경쟁법 체계는 최근 대대적인 개편을 거쳤으며, 이는 대기업집단이 인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도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India, CCI)는 기업결합 심사와 법 집행 양쪽에서 활동을 현저히 강화하고 있으며, FAQ와 시장조사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지침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기업집단은 인도 내 입지를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2026년 4월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계기로 이러한 흐름은 새로운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해당 정상회의에서 삼성, SK그룹, 현대, LG전자 대표들과 약 200명의 경제사절단은 2030년까지 양국 교역 규모를 500억 달러로 거의 두 배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별도로, 한국의 대표 철강기업인 POSCO는 JSW와 함께 오디샤주에 73억 달러 규모의 그린필드 일관제철 합작투자 프로젝트를 공식화했습니다.

물론 한국 기업에게 인도는 새로운 시장이 아닙니다.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은 2024년 10월 인도 사상 최대 규모의 IPO를 완료했고, 삼성은 세계 최대 규모의 휴대전화 제조공장을 설립했으며, LG전자는 안드라프라데시에 가전제품 생산시설을 구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한국의 대인도 누적 FDI는 66억 9,000만 달러로 비교적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왔습니다. 다만 향후 수년간 상당한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의 경쟁법 동향은 한국 대기업집단의 차기 인도 투자 단계에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래에서는 한국 투자자와 기업이 현재 고려해야 할 주요 변화와 실무적 조치를 정리합니다.

인도 기업결합 심사 동향

인도 경쟁법 체계에 도입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거래가치 기준(Deal Value Threshold, DVT)이 새로운 기업결합 신고 트리거로 도입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거래가치가 200억 루피, 미화 약 2억 2,014만 달러를 초과하고 대상회사가 인도에서 상당한 사업 활동(Substantial Business Operations, SBO)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CCI에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가치 산정은 비교적 명확한 반면, SBO 해당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특히 디지털 활동 기반을 가진 사업의 경우 상당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CCI는 “디지털 서비스”를 넓은 개념으로 해석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해 최종 이용자 또는 기업에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또는 인터넷 기반 활동을 포괄하며, 대가 지급 여부는 불문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정의가 순수 디지털 사업자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상회사의 주된 사업 활동이 디지털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CCI는 FAQ를 통해 그러한 서비스도 SBO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뉘앙스입니다. 또한 DVT 테스트는 독립적인 신고 트리거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DVT는 기존의 자산 및 매출액 기준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병행하여 작동합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소규모 대상회사 면제 기준을 명확히 하회하는 거래라도, DVT 테스트를 충족하는 경우 CCI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액 제조업 확장, 디지털 접점이 있는 사업, 현대차 또는 POSCO-JSW 그룹 철강 프로젝트와 같은 합작투자 등 한국의 대인도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거래에서는 전통적인 자산 또는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높은 거래가치로 인해 신고 요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투자자와 기업은 거래가치 및 SBO 평가를 사후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며, 거래 전 실사의 초기 단계부터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2025년 인도 기업결합 심사 제도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CCI가 거래 당사자 간 경쟁상 중점을 평가하는 방식과 관련됩니다. 과거에는 중복 분석이 비교적 좁은 범위의 개별 법인 단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Green Channel Rules 및 FAQ에 따른 개정 체계는 이러한 분석을 거래 양측의 최종 지배자(Ultimate Controlling Person, UCP)에게 귀속되는 전체 그룹으로 확대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배 대상 법인, 계열사, 지배 대상 법인의 계열사, 그리고 UCP 계열사의 지배 대상 법인이 포함됩니다.

한국 대기업집단에 대한 실무적 영향은 상당합니다. 과거에는 개별 법인 단위에서 명백한 중복이 없다는 이유로 신속한 Green Channel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거래라도, 이제는 그룹 단위의 중복이 드러나 공시와 실질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래 서명 훨씬 이전 단계에서 경쟁적 그룹 전체를 조기에, 그리고 포괄적으로 매핑하는 것은 더 이상 신중론 차원의 조언이 아니라 상업적·규제상 필수 요건이 되었습니다.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의 취득 및 LP 투자에 대한 영향

인도 기업결합 심사 환경에서 주목할 만한 발전은 CCI의 결정례를 통해 처음 등장하고, 현재는 Green Channel Rules에 성문화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Commercially Sensitive Information, CSI) 개념의 공식 인정입니다. CSI는 기업결합 평가에서 구조적으로 중요한 개념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은 단순한 공시 실무를 넘어, 계열사 판단, 면제 적용 가능성, 사모펀드 및 LP 투자 취급에까지 미칩니다.

CCI는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CSI에 접근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은 취득자의 계열사로 간주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그 결과는 즉각적이고 중대합니다. CSI 접근을 통해 계열관계가 성립하면, 새롭게 계열사로 판단된 법인은 모든 기업결합 신고에서 중복 평가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중요성은 병행되는 또 다른 결과로 인해 더욱 커집니다. CSI의 취득은 계열사 판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취득자가 면제규칙상 이용 가능한 면제에 의존할 자격도 상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정 면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화된 거래라 하더라도, 의도치 않게라도 CSI 접근이 인정되면 해당 보호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직접 투자하거나 공동투자 구조를 통해 투자하는 LP는 투자 조건이 대상회사 또는 그 기초 포트폴리오 회사의 CSI에 대한 우발적 접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이 인정되는 경우, 수동적이고 순수한 재무적 투자로 구조화되고 의도된 거래가 전략적 투자로 재분류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SK그룹과 같은 사업에 대해 인도 중심 사모펀드 또는 공동투자 구조에 참여하는 한국 투자자에게 중요합니다. 정보공유계약이나 데이터 접근권이 인도 경쟁법상 신고 요건을 의도치 않게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도 시장에서 활동하는 한국 LP 및 PE 펀드 투자자는 개정된 경쟁법 체계를 반영하여 LP 계약상 정보권 패키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행사되기 전에, 거래 협상 단계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CCI는 최근 몇 년간 카르텔에 대한 법 집행을 크게 강화해 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조사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인도 철강 산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CCI는 WhatsApp 단체 채팅과 내부 기록을 포함한 디지털 증거를 활용했으며, 이를 통해 관련 당사자들이 가격 담합 및 생산량 축소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평가는 이제 법 집행 실무의 지속적인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자료가 CCI의 증거 체계에 명확히 포함되며, 규제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리니언시 측면에서는 「2023년 경쟁법 개정법」이 리니언시 플러스(Leniency Plus)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제도를 현대화했으며, 이는 2024년 2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이미 리니언시 신청자인 카르텔 참여자가 CCI가 알지 못하는 두 번째 카르텔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 두 카르텔 모두에 대해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협조 신청자는 첫 번째 카르텔에 대해 추가로 30%의 감경을 받을 수 있고, 새로 공개한 카르텔에 대해서는 100%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에게는 강력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과 엄격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관리가 이제 필수적인 고려사항입니다.

AI는 CCI의 규제 관심 영역에 확실히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CCI가 최근 발간한 AI 시장조사 보고서를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AI 기반 시장의 경쟁 역학을 파악하고, 향후 AI 관련 행위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CCI의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보여줍니다. 인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 기술기업에게 이러한 규제 기초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컴플라이언스상 함의를 가집니다.

CCI의 최근 Intel 사건 결정은 유용한 참고 사례를 제공합니다. CCI는 Intel이 문제 된 보증 정책을 자발적으로 철회한 점을 감경 요소로 인정했으며, 그 결과 최종적으로 명목상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여기서 도출되는 시사점은 선제적 시정조치와 입증 가능한 선의가 법 집행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 기술기업은 두 가지 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첫째, 인도에서 배포·운영 중인 AI 모델과 알고리즘 시스템에 대해 구조화된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가격 산정 로직, 추천 엔진 및 데이터 공유 약정이 경쟁법상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고객, 유통업체 및 플랫폼 파트너와의 하위 계약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계약 조건이 의도치 않게 「경쟁법」 제3조 또는 제4조상 우려를 제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보다 넓게는, 운영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모든 산업의 한국 기업들이 인도법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내부 경쟁법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과 AI 자체 점검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CCI는 효과적으로 설계되고 실제로 이행되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조사 발생 시 감경 요소로 고려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규제 당국의 관심과 디지털 증거 확보 역량이 강화되는 환경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한 모범 관행이 아니라 실질적인 방어선입니다.

맺음말

인도의 경쟁법 환경은 현재 중대한 전환의 한가운데에 있으며, 이는 산업과 지역을 막론하고 기업들의 시장 참여 방식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과 투자자에게 위에서 설명한 동향은 추상적인 규제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거래 구조 설계, 투자 전략, 그리고 일상적인 시장 행위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환경을 효과적으로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법적 체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사업상 의사결정의 가장 초기 단계부터 컴플라이언스를 내재화할 수 있는 선제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6

인도 노동시장: 새로운 규정

인도는 규모, 속도, 그리고 상당한 기회로 정의되는 시장입니다. 재벌 대기업부터 빠르게 성장하는 중견 기업에 이르기까지 한국 기업에게 인도는 사업 확장 과정에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 규제 및 고용 환경을 제시합니다.

인력 구조 설계는 비용, 유연성 및 규제상 익스포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운영 의사결정입니다. 이는 일부 경영상 전제가 관할권을 넘어 그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근로시간이 한 가지 예입니다. 한국은 주 52시간 근무제로 이동해 온 반면, 인도는 일반적으로 주 48시간 한도를 따르며, 초과근로 한도와 의무적인 가산수당 지급 요건이 적용됩니다.

해고도 또 다른 예입니다. 인도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임의고용 관할권이 아닙니다. 해고에는 절차와 보상이 필요하며,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의 정리해고는 정부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보호라는 일반적인 방향성은 한국 고용주에게 익숙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적 장치와 실무상 이행 방식은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는 인력 모델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며, 이상적으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인도 내 인력 구조 설계

인도에서의 인력 구조 설계는 각각 상이한 법적·비용상 함의를 가진 여러 모델 중에서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스타트업 생태계, 전 세계에 분산된 팀의 성장은 고용주가 활용할 수 있는 인력 전략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기업들은 전통적인 고용 모델에 더해 독립 컨설턴트, 프리랜서, 나아가 시간제 최고재무책임자(CFO), 최고인사책임자(CHRO), 법률고문과 같은 부분형 리더십 역할까지 점차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정규직 고용에 수반되는 장기적 비용 부담 없이 전문 역량에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팬데믹 이후 원격근무 확산, 인재의 글로벌화, 각 이코노미의 확대에 의해 가속화되었습니다. 다만 그 활용은 전통 산업보다 기술 기반 및 혁신 주도 산업에서 더 두드러집니다.

따라서 인도 내 고용주들은 사업상 필요에 따라 다양한 인력 구조 모델을 채택합니다. 각 모델은 서로 다른 법적 흔적을 남기며, 어느 모델도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획일적인 문서 양식이나 접근법만으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도에 진입하거나 사업을 확대하는 기업에게 핵심 질문은 유연한 인력 전략을 채택할지 여부가 아니라, 자사 사업에 적합한 모델 조합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활용 가능한 각 고용·업무위탁 구조와 그에 따른 법적·상업적 함의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적절한 인력 모델의 선택

인도에서의 인력 구조 설계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직접고용, 간접고용 또는 제3자 활용, 그리고 비고용 관계입니다.

직접고용

a. 정규직 고용은 핵심 직무, 리더십 직책 및 장기 운영 인력에 가장 명확한 모델입니다. 고용주는 해당 개인을 직접 자사 인력으로 채용하고, 일상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며, 임금, 복리후생, 근로조건 및 고용 종료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b. 기간제 고용은 인도의 새로운 노동법 체계에서 인정되는 고용 유형입니다. 이는 직접고용의 한 형태이지만, 서면계약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기간 동안 근무하도록 설계됩니다. 이 모델은 계절적 수요, 사업 확장기, 기한이 정해진 프로젝트에 특히 적합합니다. 다만 이는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낮은 대안이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대체로 동등한 수준의 임금 및 법정 복리후생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관련되는 경우 비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간접고용 또는 제3자 활용

a. 계약노동은 제3자 계약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를 주사용자의 사업장에 배치하는 구조입니다. 이 모델은 보안, 운송, 청소, 구내식당 서비스와 같은 지원 기능에서 일반적이고 비교적 수용 가능성이 높은 방식입니다. 다만 인도의 대규모·기성 제조기업들이 계약노동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위험은 계약노동이 생산 연계 기능 또는 핵심 기능에 사용될 때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근로자들이 주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구조는 진정한 외주가 아니거나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로 문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노동법 체계는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 '핵심 활동'에 계약노동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모델은 중대한 법정 제한도 수반합니다.

b. 기록상 고용주(Employer of Record, EOR) 구조는 일반적으로 제3자 서비스 제공자가 인도에서 개인들을 자신의 급여대장상 정식으로 고용하되, 해당 개인들은 실질적으로 최종 사용자 기업을 위해 근무하고 그 기업의 업무 체계에 기능적으로 편입되는 방식입니다. 이 모델은 조직이 현지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인도 시장을 시험하고자 할 때 자주 활용됩니다.

그러나 EOR 구조는 마찰이 전혀 없거나 위험이 없는 구조가 아닙니다. 외국 회사가 실질적인 통제권을 보유하고 해당 인력이 그 운영에 실질적으로 통합되어 있다면, 공동고용, 노동법, 세무 및 고정사업장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c. 파견근무자 및 주재원은 인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서 여전히 흔히 활용됩니다. 특히 기술 이전, 스타트업 리더십 및 경영 감독 목적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핵심 쟁점은 실질적인 고용주가 누구인지, 어느 법인이 급여 비용을 부담하는지, 그리고 해당 파견근무자가 현지 노동법상 인도 인력의 일부로 간주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맥락에서 한-인도 사회보장협정은 중요합니다. 인도에 파견된 한국 국적자는 본국 당국으로부터 유효한 가입증명서(Certificate of Coverage)를 발급받는 경우, 이중 사회보장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비고용 관계

a. 컨설턴트 / 독립계약자 / 프리랜서는 진정으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산출물 기반 업무에 활용될 수 있으며, 주로 프로젝트 또는 마일스톤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방식은 장기 고용 의무 없이 유연성과 전문성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다만 이는 오분류가 발생하기 가장 쉬운 모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도 법원은 계약상 명칭이 아니라 관계의 실질을 봅니다. 컨설턴트가 사실상 직원처럼 일하고, 직원처럼 보고하며, 회사의 근무시간을 따르고, 사업 운영에 깊이 통합되어 있다면, 법원은 해당 관계를 고용관계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인력을 활용한 법인은 일반적으로 직원에게 부여되는 임금, 사회보장, 퇴직급여 및 휴가 혜택에 대해 소급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b. 각 및 플랫폼 근로자 활용은 물류, 배송, 모빌리티, 전자상거래 및 플랫폼 기반 모델을 운영하는 기업에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노동법 체계는 “각 근로자”와 “플랫폼 근로자”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이러한 업무 형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들이 직원으로 취급되지는 않더라도 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하고 있습니다.

노동법 체계는 이러한 근로자를 위한 정부 지원 복지제도를 예정하고 있으며, 그 재원은 일반적으로 매출액과 연계된 애그리게이터의 의무 부담금을 통해 일부 조달됩니다. 이러한 제도 중 다수는 아직 실제 시행 단계에 이르지 않았지만, 여러 주에서는 이미 병행적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더 강한 규제 감독과 그에 따른 플랫폼 기반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의무 및 비용 증가라는 명확한 정책 방향을 보여줍니다.

회복탄력성 있는 인력 전략 설계

인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규모를 확대하는 데 성공하는 조직은 초기 단계부터 인력 구조를 올바르게 설계하고, 인도의 규제 환경이 요구하는 엄격한 수준으로 이를 관리하는 조직입니다. 고려해야 할 주요 실행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직의 성장 전략과 병행하여 인력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계약노동, 컨설턴트, EOR 인력, 파견근로자, 각 및 플랫폼 근로자는 각각 서로 다른 법적·비용상 결과를 수반합니다.
- 계약노동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모델이 오분류로 이어질 수 있는 금지 영역 또는 고위험 영역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제조기업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 공급업체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견고한 계약상 보호장치, 감사권, 임금 지급 검증 및 면책 조항을 통해 달성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의 미준수가 종종 주사용자의 책임으로 직접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 EOR, 원격근무 및 역외 모델은 노동, 세무 및 외환관리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 법인이 인도 소재 인력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 인도에 맞게 정책, 계약 및 관리 관행을 현지화해야 합니다. 주별 규칙, 복무규정 및 산업별 의무로 인해 현지화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고충 처리, 성과 관리, 휴가 및 공휴일과 관련해서는 문화적 뉘앙스에 유의해야 합니다.

인도의 변화하는 노동법 체계는 인력 유연성을 어떻게 설계하고 관리해야 하는지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게 기회는 사업 목표에 부합하면서도 인도의 법적 체계에 적합한 다층적 인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각 모델은 고유한 상업적 장점을 가지지만, 충분한 주의 없이 실행될 경우 각기 다른 규제상 경계와 오분류 리스크도 수반합니다. 실무상 가장 효과적인 접근은 하나의 활용 구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성격, 필요한 통제 수준, 계약 기간 및 활용 목적에 따라 각 인력 범주를 신중하게 매핑한 정교하게 조정된 모델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초기 단계의 구조 설계 결정은 장기적인 결과를 가져오며, 후속 단계에서 이를 수정하는 것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설계되고, 충분히 문서화되며, 현지 상황에 맞게 조정된 인력 전략은 역동적인 인도 시장에서 경쟁력 있게 운영하기 위한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7

인도 내 분쟁 대응: 주요 동향

최근 몇 년간 인도와 대한민국 간 정치·경제적 협력이 확대되면서, 자동차, 제조업, 반도체, 재생에너지, 기술, 방위산업 및 물류와 같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인도 투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인도 시장 내 입지가 깊어질수록 민간 당사자, 국가 또는 그 기관, 그리고 필연적으로 인도의 법률 및 규제 체계와 접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도에 사업 기반을 둔 해외 투자자와 다국적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해 온 사안 중 하나는 인도 사법 제도를 통한 계약상 권리의 집행, 특히 공식적인 분쟁 해결의 속도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협력을 장려하며,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인도의 입법부와 사법부는 최근 중요한 조치들을 도입해 왔습니다.

특히 인도는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계약 집행 관련 법률을 개혁하는 한편,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를 강화해 왔습니다.

본 장에서는 한국 기업에 특히 관련성이 높은 분쟁 해결 환경의 최근 주요 동향을 살펴봅니다.



중재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분쟁 해결은 지속 가능한 투자와 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20년간 인도는 중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혁하여, 특히 해외 투자자와 다국적 기업이 관련된 상사 분쟁에서 기존 법원 절차를 대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중재 절차 완료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한을 도입하고, 중재 개시 전부터 중재 종료 후까지 모든 단계에서 사법적 개입의 범위를 제한했으며, 중재와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중재와 연계된 쟁점을 포함한 복잡한 상사 사건을 전담하는 상사법원을 설치하고, 임시중재보다 기관 중재를 장려하는 조치들이 시행되었습니다.

인도 법원 역시 중재를 효율적인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으로 받아들이어 왔으며, 특히 계약상 권리의 집행을 구하는 상사 사건에서 중재 친화적인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최근 주목할 만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인도 대법원은 외국 법인의 인도 자회사를 포함하여 두 인도 당사자가 외국을 중재지로 선택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에 설립된 자회사들은 분쟁을 반드시 인도 관할에 따르게 하지 않고, 중립적인 외국 장소를 중재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상호주의 관할지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외국 중재판정으로서 인도에서 계속 집행 가능합니다.

b. 인도 법원은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상당히 좁게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판례들은 이의 제기에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중재지의 관할 법원에서 이미 중재판정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당사자들은 인도에서 동일한 쟁점을 다시 다룰 수 없습니다. 인도 대법원은 최근 초국경적 쟁점 금반인의 원칙을 적용하여 외국 중재판정에 대한 개입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c. 인도 대법원은 또한 일방 당사자가 중재인 후보 명단을 일방적으로 구성하고, 상대방이 그 명단에서 중재인을 선택하도록 하는 중재조항을 최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가 또는 국영기업이 관련된 계약에서 흔히 사용되던 방식입니다. 따라서 인도 국영기업과 빈번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다국적 기업에게 특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조정

인도는 포괄적인 법정 체계를 통해 조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2023년 조정법」(Mediation Act, 2023, 조정법)을 제정했습니다. 아직 이 법의 모든 조항이 전면 시행된 것은 아니지만, 입법 취지는 소송 전 조정 제도를 확립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전 조정은 긴급한 임시적 구제가 필요하지 않은 상사 사건에서 법정 요건으로 적용됩니다. 당사자들은 상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을 선택지로 검토해야 합니다. 조정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존에 조정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소송 전 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민사 또는 상사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온라인 조정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조정인을 인증하기 위한 인도조정위원회(Mediation Council of India)를 설립하며, 전문적 행위 기준을 규정합니다.

조정법이 전면 시행되면, 인도에 소재한 조정인이 인증하고 당사자들이 서명한 조정합의서는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가지며, 법원 판결과 같이 집행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이의 제기 사유는 사기, 부패, 사칭 또는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 등으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개혁은 고액 정부계약, 즉 1억 루피 초과 계약, 한화 약 15억 4,605만 1,000원 규모의 계약에서 중재를 제한하는 인도 정부의 최근 지침과 함께, 조정을 분쟁 해결을 위한 선호되는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이며 비밀이 보장되고 관계를 보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촉진하려는 인도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계약 집행

인도에서는 「1963년 특정이행법」(Specific Relief Act, 1963, SRA)이 특정이행을 통한 계약상 의무의 집행을 규율합니다. 최근까지 특정이행 구제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으며, 계약 위반 시 청구할 수 있는 표준적인 구제수단은 손해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부터 시행된 SRA 개정으로 이러한 입장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개정 이후 특정이행은 기본적인 구제수단이 되었고, 법원이 이러한 구제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은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만을 구하는 대신, 전략적 매각이나 바이백 등 계약상 합의된 투자 회수 옵션의 이행을 청구함으로써 자신의 투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편된 형사법 체계

인도는 2024년 7월부터 기존 법률을 새로운 법률로 대체함으로써 실제 형법 및 형사절차법 체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새로 도입된 법률은 형벌법에 해당하는 「2023년 바라티야 나야 산히타」(Bharatiya Nyaya Sanhita, BNS), 형사절차법을 규율하는 「2023년 바라티야 나가릭 수락샤 산히타」(Bharatiya Nagarik Suraksha Sanhita, BNSS), 그리고 증거법에 해당하는 「2023년 바라티야 삭샤 아디니얌」(Bharatiya Sakshya Adhinyam, BSA)입니다.

이러한 개혁은 기술을 활용하고 수사 절차 및 형사재판 진행 방식을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특정 범죄에 대해 과학수사를 예정하고, 수사 및 재판 완료에 대한 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상 구제수단에 더해 형사법상 구제수단도 검토하려는 다국적 기업과 사업자에게 이번 개편은 환영할 만한 개혁입니다.

별도로, 인도 대법원은 최근 인도법상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의 범위에 대해 명확성을 제공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특히 조사 및 소송에서 외부 법률자문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강력한 비밀유지특권 보호가 인정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이 판결은 사내 법무팀에 대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 적용 범위의 명확한 한계를 제시하면서, 기업과 사내 법률자문 간 커뮤니케이션에는 동일한 수준의 비밀유지특권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오랜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해외 투자자에게 이 판결은 서신 및 업무산출물에 대한 비밀유지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토콜에 관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맺음말

이러한 동향은 인도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속도, 확실성 및 글로벌 정합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재에서의 집행 친화적 접근, 조정의 법제화, 특정이행 집행력 강화, 그리고 한-인도 Fast Track 메커니즘과 같은 양자 플랫폼은 모두 국경 간 투자자와 기업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인도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한국 투자자에게 이러한 변화하는 제도적 틀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촉진하려는 인도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러한 개혁은 인도가 고성장 시장일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발전시키고 계약상 권리를 집행하는 데 중점을 두는 관할지라는 점을 더욱 강화합니다.

용어집



AAR	사전심판청
AI	인공지능
AIF Regulations	2012년 인도 증권거래위원회 대체투자펀드 규정
AIF3	대체투자펀드
CAROTAR	2020년 무역협정상 원산지 규정 관세관리 규칙
CBIC	중앙간접세관세위원회
CCI	인도경쟁위원회
CEPA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ompetition Act	2002년 경쟁법
CSI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
DTA	국내관세지역
DVT	거래가치 기준
EOU	수출지향기업
FAQs	자주 묻는 질문
FDI	외국인직접투자
FM Regulations	2025년 국제금융서비스센터청 펀드운용 규정
FME	펀드운용기관
FPI	외국인포트폴리오투자
FTA	자유무역협정
FVCI	외국벤처캐피털투자



GIFT City	구자라트 국제금융기술도시
GIFT IFSC	GIFT City 국제금융서비스센터
Green Channel Rules	2024년 경쟁법상 기업결합 기준 규칙
IFSCA	국제금융서비스센터청
IFSCA	국제금융서비스센터청
INR	인도 루피
Leniency Plus	2024년 인도경쟁위원회 과징금 감면 규정
LLP	유한책임파트너십
LP	유한책임사원
MFN	최혜국대우
PLI	생산연계 인센티브
PPM	사모투자설명서
RoDTEP	수출제품 관세 · 세금 환급제도
RoSCTL	주 · 중앙정부 조세 및 부과금 환급제도
SBO	상당한 사업 활동
SEBI	인도 증권거래위원회
SEZ	특별경제구역
SPV	특수목적기구
SVB	특별평가국
UCP	최종 지배자
USD	미국 달러

대표단



GANESH RAO | 파트너
ganesh.rao@trilegal.com



JITENDRA MOTWANI | 파트너
jitendra.motwani@trilegal.com



NEERAJ MENON | 파트너
neeraj.menon@trilegal.com



PRATEEK LALA | 파트너
prateek.lala@trilegal.com

대표단



RUDRESH SINGH | 파트너
rudresh.singh@trilegal.com



SOURABH RATH | 파트너
sourabh.rath@trilegal.com



UPASANA RAO | 파트너
upasana.rao@trilegal.com



VEENA GOPALAKRISHNAN | 파트너
veena.gopalakrishnan@trilegal.com

ICCK 소개

주한인도상공회의소(India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ICCK)는 인도와 한국 간 경제·문화적 유대 강화를 위해 활동하는 대표적인 양자 경제단체입니다. ICCK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와 민간기업을 모두 지원한다는 명확한 역할 아래, 회원들이 기회를 발굴하고 시장의 복잡성을 헤쳐 나가며 국경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ICCK는 상공업계를 대표하는 목소리로서, 보다 넓은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위한 핵심 접점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책 입안자 및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산업별 우선 과제와 규제 동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 간 무역, 상업 및 투자 사안에 관한 대화를 촉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며, 회원사의 이해관계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ICCK는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책임 있는 비즈니스 관행을 장려하고, 회원사들이 활동하는 지역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한 기업 시민의식도 촉진하고 있습니다.

Trilegal 소개

Trilegal은 25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인도의 대표적인 종합 법률사무소로, 깊이 있는 전문성과 고객 중심 접근방식으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Trilegal은 Fortune 500 기업, 글로벌 투자펀드, 인도 주요 대기업집단, 국내외 은행, 기술 및 미디어 대기업, 패밀리오피스, 고액자산가 등 다양한 고객에게 자문을 제공합니다.

Trilegal은 독자적인 록스텝 모델에 따라 운영되는 157명의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 최대 규모의 지분 파트너십 로펌입니다. 또한 뭄바이, 델리, 벵갈루루, 첸나이 및 구루그람 사무소에서 1,300명 이상의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Trilegal은 Chambers & Partners Asia Pacific 및 Global, Legal 500 Asia Pacific, Benchmark Litigation 등 주요 법률 디렉터리에서 인도 최상위 로펌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또한 2025년 India Business Law Journal, IBLJ가 선정한 Best Overall Law Firm, 2025년 Financial Times, FT Innovative Lawyers Asia-Pacific Awards의 Innovative Lawyers in Disputes & Crisis Management, 2024년 IFLR Asia-Pacific의 M&A Firm of the Year, 2024년 VCCircle Awards의 Law Firm of the Year by Deal Volume 등 여러 권위 있는 상을 수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rilegal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TRILEGAL.COM

파트너
157명

변호사
1300명

사무소
9개

연간 수상 · 인정
20건 이상